

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이정희 의원 외 6인

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 의 자: 이정희·김근한·김낙관·김원섭

김재우·박세채·추은희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나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다.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라.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마.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바.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사. 우수사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4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2조, 제25조
- 2)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

나. 부서검토: 환경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4. “체험환경교육”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

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,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미시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환경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
2. 학교, 사회, 사업자, 체험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
3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·운영
5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
6.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

7.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
8.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·관리
9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·협력
10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고,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

제5조(의견 청취)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,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교환경교육 활성화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
2.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
3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5.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
6.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7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공공기관·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
3.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
4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5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)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환경교육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구미시 환경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10조(환경교육센터의 운영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.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
2.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
3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
4.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
5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6.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
7. 시, 학교,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
8.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환경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

립한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재정지원)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단체·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우수사례) 시장은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·기관별·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협력체계구축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교육지원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원 등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

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

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 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지역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25조(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

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 : 환경정책과

조 례 명	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□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(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) ▪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책무) □ 주요 사항 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~제3조) ○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 ○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 ○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 ○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 ○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 ○ 우수사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4조) □ 검토 결과 ○ 일상화된 기후변화 속에서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○ 다만 중복된 표현, 환경교육센터 위탁 관련 조문 조정 필요 ([붙임2]참고) 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계획 ○ 기대효과 ▪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제도 마련 ▪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 ○ 문 제 점 : 없음	

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안 제11조(환경교육의 위탁), 제12조(재정지원)
 -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운영비(위탁)
 - 학교·법인·단체의 환경교육 사업비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환경교육센터를 새롭게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것 보다 현재 기후변화체험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선사업 중에 있는 ‘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’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성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됨
- 현재 탄소제로교육관은 「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구미도시공사에서 공공 위탁운영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언급된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현재 운영비(공사·공단 전출금)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학교·법인·단체의 환경교육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예상됨
- 또한, 현재 탄소제로교육관,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추진중인 ‘찾아가는 환경교육’과 연계하여 교육, 강사, 장소 등의 지원 가능함
- 따라서 상기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4. 작성자

-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김준환(5245)

조문 대비표

원안	변경안
제6조(영유아 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. 1. ~ 7.(생략)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	제6조(학교환경교육 활성화) ①-- ----- -----. 1. ~ 7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 1. ~ 5.(생략) 6.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 ----- ----- --. 1. ~ 5.(현행과 같음) <삭제> 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제11조(환경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1조(환경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<u>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
1. <u>국·공립 교육시설</u> 2. <u>지역 환경교육센터</u> 3. <u>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단단체</u>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	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제12조(재정지원) ① <u>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② <u>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----- . 다만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 제12조(재정지원) <u>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단체·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삭 제>